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3~72 호
------	-------------

발의연월일 : 2013. 08. 27.

발 의 자 : 이성복, 강창남, 안철우 의원

1. 제안이유

-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歩道)는 국토해양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한 보도정비·보수 시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보도의 정비계획
- 보도정비·보수 매뉴얼과 공사관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포장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보도공사 예고제와 실명제 시행
- 보도공사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신속한 정비·보수를 위한 보도블록의 확보와 보관

라. 보도의 정비기준 규정(안 제6조)

- 보도정비·보수구간 선정의 우선순위 수립
- 보행 장애물제거 및 보도턱 없애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

마. 보도블록의 재활용 규정(안 제7조)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보관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
-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도시건축과와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8. 23 ~ 8. 29.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

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
3.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